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3. . . (제 회)	

개 발 제 한 구 역 의 지 정 및 관 리 에
관 한 특 별 조 치 법 시 행 령
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원희룡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의결주문
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이 개발제한구역 등 도시 공간을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·도지사에게 위임된 30만제곱미터 이하 면적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100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확대하려는 것임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대통령령 제 호
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30만제곱미터 이하”를 “100만제곱미터 미만(수도권의 경우에는 30만제곱미터 이하로 한다)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해제권한 확대에 관한 적용례)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·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0조(권한의 위임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는 지역이 제2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지역으로서 면적이 <u>30만제곱미터 이하</u> 이거나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취락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토지, 제6호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의 관통 대지 및 제7호에 따른 소규모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·도지사에게 위임한다. 다만,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계획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·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	제40조(권한의 위임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100만제곱미터 미만</u> <u>(수도권의 경우에는 30만제곱미터 이하로 한다)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1. 2. (생략)	1. 2. (현행과 같음)
② ~ ⑨ (생략)	② ~ ⑨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	
연 락 처	(044) 201 - 3747